

영등포구의회
제13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5.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신홍식의원 외 6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8. 5. 15.
- 제 안 자 : 신홍식의원(외 6인)

■ 제정(제안) 이유

- 「도로법시행령」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장 교통 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도”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거나, “특별시도” 1개 차로 이상을 20일 이하로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 교통소통대책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
- 공사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관련법규

-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법시행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하여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통소통 대책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1조** 목적은 도로점용 공사시 발생하는 교통소통 등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조** 정의는 도로·도로점용공사·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법률적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 적용대상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여 공사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소통 대책 수립 시 공사기간·시간대, 공사 방법, 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은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등의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며,
- **안 제8조**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은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명권,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안 제10조**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등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안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시정명령 불이행 시 도로법을 적용 고발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 **안 제13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이하인 “특별시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관리하여 대상공사 시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2007년도 도로점용공사 기간별 허가건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도로점용공사 기간별 허가건수

계	구 도			특별시도		
	소 계	10일미만	10일이상	소 계	10일미만	10일이상 20일이하
137	78	6	72	59	4	5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5. 20.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법령

관 련 법 령

■ 도 로 법

제11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5조(구도)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3조나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별표 1] 도로점용기준 제4호의 (2)**

(2)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평가대행자의 등록)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